

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(제3조제5항 및 제6항 관련)

1.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

분류	품목
가. 전선 및 전원코드	대상 없음
나. 전기기기용 스위치	대상 없음
다.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	대상 없음
라.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	대상 없음
마. 전기용품 보호용부 품	대상 없음
바. 절연변압기	대상 없음
사. 전기기기	1) 감자 탈피기(脫皮機) 2) 전기 정미기(精米機) 3) 전기 빵 자르개 4) 애완동물 목욕기 5) 전기주류숙성기 6) 전기사계 7) 적외선·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8) 전기분수기 9) 투영기 10) 착유기(搾油機) 11) 보풀 제거기 12)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13) 전기 작동 도어록(door lock) 14)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15) 전동형 롤스크린 16) 그 밖에 1)부터 15)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
	비고)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, 방폭형

	인 것은 제외한다.
아. 전동공구	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
자. 오디오·비디오 응용기기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비디오카메라</li> <li>2) 튜너</li> <li>3) 라디오수신기</li> <li>4) 리시버</li> <li>5) 음성기록계</li> <li>6) 음성플레이어</li> <li>7) 위성방송수신기</li> <li>8) 비디오폰</li> <li>9) 음질조절기</li> <li>10) 신호변환장치</li> <li>11) 컴프레서 게이트</li> <li>12) 전자시계</li> <li>13) CCTV 카메라</li> <li>14)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</li> <li>15) 영상기록계</li> <li>16) A/V신호수신기</li> <li>17) CATV방송수신기</li> <li>18) 턴테이블</li> <li>19) 모듈레이터</li> <li>20) 비디오게임기구(텔레비전 수상기에 접속하여 사용하거나 브라운관, 액정표시장치 또는 플라즈마 표시를 갖는 구조인 것만 해당된다)</li> <li>21)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</li> <li>22) 앰프</li> <li>23) 편집기</li> <li>24) 음성 및 영상분배기</li> <li>25) 영상전송기</li> <li>26) 전자악기</li> <li>27) 오디오프로세서</li> <li>28) 영상프로세서</li> <li>29) 그 밖에 1)부터 28)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</li> </ol>

	<p>비고) 기계·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.</p>
<p>차. 정보·통신·사무기 기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스캐너</li> <li>2) 지폐계수기</li> <li>3) 금전등록기</li> <li>4) 어학실습기</li> <li>5) 전자철판 및 보드</li> <li>6) 동전계수기</li> <li>7) 전동타자기</li> <li>8) 전기소자기</li> <li>9) 교통카드 충전기</li> <li>10) 번호표 발행기</li> <li>11) 생활무선국용 무전기(이동형, 고정형 및 아마추어 무선국용 기기를 포함한다)</li> <li>12) 음성·음향신호 및 그 밖의 신호전송용 무선기기(무선마이크 시스템, 무선스피커 시스템을 포함한다)</li> <li>13)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단말장치(IPTV용 셋톱박스 등을 말한다)</li> <li>14)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(디지털 CATV용 셋톱박스 등을 말한다)</li> <li>15)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(지상파 디지털 TV용 셋톱박스, D/A용 셋톱박스, A/V신호수신기 등을 말한다)</li> <li>16) A/D 및 D/A 신호변환기(아날로그신호를 디지털방송신호로 변환해 주는 셋톱박스 등을 말한다)</li> <li>17)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(셋톱박스 등을 말한다)</li> <li>18) 재단기</li> <li>19) 실물화상기</li> <li>20) 입체영상기</li> <li>21) 휴대폰, 스마트폰, TRS 휴대폰 등 이동형 무선통신기기(휴대형 통신기기만 해당한다)</li> <li>22) 전화기(공공전화망에 연결되는 것만 해당한다)</li> <li>23) 팩시밀리기기(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를 포</li> </ol>

	<p>함한다)</p> <p>24)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</p> <p>25)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</p> <p>26)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</p> <p>27)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(금융단말기기, 정보검색용 단말기기, 현금자동취급기 등을 말한다)</p> <p>28)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기기(버스정류장 버스안내시스템 등을 말한다)</p> <p>29) 원격제어방송기기</p> <p>30) 제분기</p> <p>31) 그 밖에 1)부터 30)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</p>
	비고) 기계·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.
카. 조명기기	형광램프용 스타터(starter)
타. 전기저장장치 구성품	대상 없음

## 2.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

분류	품목
가. 화학	폴리염화비닐관(연질염화비닐호스를 포함한다)
나. 생활	<p>1) 가구(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에 한정한다)</p> <p>2) 롤러스케이트</p> <p>3) 바퀴 달린 운동화</p> <p>4) 모터 달린 보드</p> <p>5) 창문 블라인드</p> <p>6) 쌍꺼풀용 테이프</p> <p>7) 속눈썹 열 성형기</p> <p>8) 가(假) 속눈썹(인조속눈썹)</p> <p>9) 쇼핑카트</p> <p>10) 휴대용 사다리</p>

	11) 인라인롤러스케이트 12) 킥보드
다. 기계금속	1) 자동차용 휴대용 잭 2) 빙삭기
라. 섬유	방한용 · 패션용 · 스포츠용 마스크
마. 건축	물탱크